

# 제5차 국가철도망(제천~평창)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

의안 번호	50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7.  
발 의 자 : 이창열 의원  
찬 성 자 : 박춘희, 김광성  
김성기, 심현정  
이은미

## 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(제천~평창) 반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구성·운영 중인 『제5차 국가철도망(제천~평창)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』의 활동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.

## 2. 제안이유

- 『제5차 국가철도망(제천~평창) 반영을 위한 특별위원회』는 2024.11.06. 구성된 이후, 평창군의회외의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, 제천시의회·영월군의회와의 공동 건의문 채택, 강원특별자치도 방문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음.
-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현재까지 확정 발표되지 않았고, 집행부 및 번영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,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

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2조

## 【관계법령】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□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(이하 “본회의”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